

의안번호	제 1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 
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07월 06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07월 06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2022. 4. 15. 및 같은 해 7. 1.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또는 폐지된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부서 명칭 변경(2022. 7. 1. 시행)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(안 제1조 ~ 제6조)
  -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
  -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
  -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  -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
  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  -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- U대회추진과 폐지(2022. 4. 15. 시행)에 따른 조문 삭제(안 제5조)
  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5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 
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공보관에서”를 “대변인이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공보관”을 각각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도정조정  
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공보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 
개정)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2호 중 “공보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공보관실로”를 “대변인에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보관”을 각각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공보관, 감사관, U대회추진과”를 “대변인, 감사관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일반행정분과의 부서란 중 “공보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1.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발행부서)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<u>공보관</u>에서 주관한다.</p>	<p>제5조(발행부서) ----- ----- <u>대변인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공보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은 <u>공보관</u>으로 하고 위촉직은 6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대변인</u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대변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# 2.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·국·본부장과 정책기획관, <u>공보관</u>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</p>	<p>제2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대변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이를 위촉한다. ④·⑤ (생략)	----- -----.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3.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생략)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심리전담당간사 : <u>공보관</u> 3. ~ 7. (생략) ⑤ (생략)	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대변인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
### 4.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(위촉) ①·② (생략)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<u>공보관실로</u> 요청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3조(위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대변인에게</u> -----.
제6조(운영) ① 홍보대사 관련 업	제6조(운영) ① -----

<p>무 총괄은 <u>공보관</u>이 담당하되,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<u>공보관</u>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·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.</p> <p>② <u>공보관</u>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<u>대변인</u>-----</p> <p>----- <u>대변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<u>대변인</u>-----</p> <p>-----</p>
---	--

### 5.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행정문화위원회</p> <p>가. <u>공보관</u>, <u>감사관</u>, U대회추진과, 행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충청북도자치연수원,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다. (생략)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<u>대변인</u>, <u>감사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나.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】

제3조(보좌기관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밑에 대변인을 둔다.

② ~ ③ (생략)

제4조(공보관)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을 보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.

1. ~ 25. (생략)